

2026년 HS효성/효성×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

HS효성/효성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수한 민간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실증 및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자 「HS효성/효성×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」에 참여할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6월 10일

(재)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

1 공고 개요

□ **사업명:** HS효성/효성×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

□ **사업목적**

- 대·중견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유망 기업 집중 육성지원
 - 대·중견기업의 수요 기술·BM과 매칭되는 유망기업을 선발하여 오픈이노베이션* 연계 및 제품·서비스 신속 상용화 지원
- *유망기업 기술검증(PoC), 대기업 관련 부서 매칭 및 R&D 인프라 활용 등

□ **협업파트너:**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, HS효성/효성,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

□ **모집대상:** 도내·외 창업기업

- 일반 분야: 7년 이내 창업기업(2019. 6. 11. 이후 창업기업)
 - 딥테크 분야*: 10년 이내 창업기업(2016. 6. 11. 이후 창업기업)
- *AI, 빅데이터, 바이오, 로봇, 반도체, 소재, 항공우주, 환경에너지 분야 기업, 농생명 바이오 산업(푸드테크, 헬스케어, 그린바이오, 레드바이오, Age Tech 등) 분야 기업, 미래첨단 산업(신·재생에너지, 수소, 이차전지 등) 분야 기업 등

모집규모: 4개사 내외

지원기업 수	PoC 자금
4개사 내외	기업 당 최대 25백만원

지원기간: 2026. 7.~12.(약 6개월)

지원내용: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및 PoC지원, HS효성/효성과 협업 (기술검증 등) 및 후속지원(투자유치, 지원사업 연계 등) 기회 제공

2 신청자격 및 모집분야

신청대상: 수요과제 내용에 부합하는 아이디어(BM) 및 기술을 보유한 도내·외 창업기업

모집분야: ①탄소소재, ②첨단소재, ③IT/서비스, ④핀테크/모바일 서비스

수요기업명	수요분야	수요기술(세부사항)
HS효성/ 효성	① 탄소소재	- <u>효성 탄소소재 적용</u>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분야/고부가가치 용·복합형 소재, 응용제품 산업 분야 (모빌리티, 로봇, 의료·헬스케어, 국방·항공우주, 웨어러블, 스포츠·레저, 산업용·토목건축, 난방·건조테크, 아트테크 등)
	② 첨단소재	- <u>효성 소재 적용</u> 용·복합제품, 혁신기술/설비개선, 공정 AI 기술도입/현장 안전확보 솔루션 등
	③ IT/서비스	- IT솔루션·서비스, ITO서비스(앱 개발 등), 스마트팩토리, 컨택센터(교육/리서치 등), 클라우드 서비스 등
	④ 핀테크/모바일 서비스	- 인공지능(AI), 전자결제사업, O2O사업, 모바일 서비스, 토큰·블록체인 등

3

지원내용

① 실증(PoC) 비용 지원: 기업 당 2,500만원 내외

구분	지원 세부사항																
PoC 자금	<p>○ PoC 프로젝트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이며, 부가세는 지원기업에서 부담 - 지원기업은 운영기관에서 배포하는 「사업비 집행 기준」에 따라 지원금을 집행, 관리하고 사업 종료 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- 비목별 세부기준은 최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비목정의 및 기준(안) 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목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준 및 정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건비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원기업이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신규직원**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*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50% 이하로 구성 ** 신규직원의 범위는 사업 공고일 이후 채용한 인력에 해당함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외주용역비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템을 고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재료비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계획서 상의 PoC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(협약 기간 내 소진이 가능한 재료비에 한해 집행 가능)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임차비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해당 아이템 개발을 위해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, 장비, 부수 기자재, 서버 등을 임차하는 경비 ex)클라우드 서버비용 등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광고선전비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계획서 상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마케팅·홍보 비용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 등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급수수료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PoC 추진과 관련된 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회계감사비 등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비목	기준 및 정의	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원기업이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신규직원**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*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50% 이하로 구성 ** 신규직원의 범위는 사업 공고일 이후 채용한 인력에 해당함 	외주용역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템을 고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	재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계획서 상의 PoC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(협약 기간 내 소진이 가능한 재료비에 한해 집행 가능) 	임차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해당 아이템 개발을 위해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, 장비, 부수 기자재, 서버 등을 임차하는 경비 ex)클라우드 서버비용 등 	광고선전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계획서 상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마케팅·홍보 비용 	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 등 	지급수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PoC 추진과 관련된 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회계감사비 등
	비목	기준 및 정의															
	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원기업이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신규직원**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*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50% 이하로 구성 ** 신규직원의 범위는 사업 공고일 이후 채용한 인력에 해당함 															
	외주용역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템을 고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															
	재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계획서 상의 PoC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(협약 기간 내 소진이 가능한 재료비에 한해 집행 가능) 															
	임차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해당 아이템 개발을 위해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, 장비, 부수 기자재, 서버 등을 임차하는 경비 ex)클라우드 서버비용 등 															
	광고선전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계획서 상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마케팅·홍보 비용 															
	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 등 															
	지급수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PoC 추진과 관련된 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회계감사비 등 															

② 운영기관 협력 프로그램 운영(안)

구분	지원내용
▶ 오픈이노베이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HS효성/효성 현업부서 및 지원기업과의 PoC 진행 * 기술고도화(전문가 멘토링), 사업화(경영관리, BM고도화 등 인적·물적 자원 활용 지원)
▶ 인프라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센터) 기업육성(엑셀러레이팅, TIPS 등) 프로그램 연계 ▪ HS효성/효성 현업부서 매칭 및 R&D 인프라 등 ▪ (전북지방중기청) 전문가 멘토링 지원
▶ 최종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HS효성/효성, 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(IR) 및 성과발표

※ 프로그램 세부 운영(안)은 HS효성/효성, 운영기관 및 최종 선정기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③ 최종점검(성과평가) 결과에 따른 후속지원

- 스케일업 지원: 현업 전문가 멘토링 지원(센터, HS효성/효성, 전북지방중기청)
- 후속지원: 투자사 IR 및 CVC연계, 판로 및 글로벌 프로그램 연계 등(센터)

4 공고 및 접수

□ 신청기간: 2026. 6. 10.(수)~6. 29.(월) 14:00까지

□ 신청방법: 전북센터 온라인 신청 플랫폼(<http://event.jbci.or.kr>) ⇨ 사업신청 ⇨ 해당사업 '상세보기' ⇨ 신청서 다운로드 ⇨ 작성 후 '신청하기'(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) ⇨ '온라인 접수'

※ 마감시간 이후 접수 건은 미접수 처리되며, 접수 마감일 업로드 문제에 대해 센터는 책임지지 않음

□ 제출서류: 붙임 서식 활용

구분	제출서류	비고
필수	신청서, 요약문 및 사업계획서 각 1부	서식 1, 2
	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공 동의서 1부	서식 3
	창업 및 유지 동의 등 책임 동의서 1부	서식 4
	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	[추가제출서류] 1-1
	사실증명원(총사업자등록내역)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	1-2
	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	1-3
	매출 증빙자료: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재무제표 등	2-1
고용 증빙자료: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	2-2	
해당 시	수출 및 투자 증빙자료 - 수출: 수출실적 증명원(한국무역협회 발급), 수출계약서, 해외특허등록서, 국제인증서, 국제협약서 등 - 투자: 투자계약서(투자금액 포함), 투자금액 입금 통장사본 등	2-3

※ 증빙서류는 **공고일 이후** 발급분만 인정

○ 제출서류 발급절차 안내

분류	제출서류명	발급처
필수서류	사업자등록증, 사업자등록증명원	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
	국세 완납증명서	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
	지방세 완납증명서	주민센터 또는 정부 24 (https://www.gov.kr)
	법인등기부등본(법인만 해당)	등기소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(www.iros.go.kr)
	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	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(www.4insure.or.kr)

5

선정절차

□ 선정절차

공고 및 선정절차		세부내용
1단계	공고 및 접수 6월 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HS효성/효성 협업 희망기업 모집 ※ 모집기업이 선발기업의 2배수에 미달할 경우 연장공고를 진행할 수 있음
↓	↓	↓
2단계	서류심사 (스크리닝) 7월 1주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협업 제안서 및 제출서류 검토(2배수 내외 선발) - (심사기준) 타당성(20), 과제 구체성(20), 협업 역량(20), 실현 가능성(20), 기업 역량(20)
↓	↓	↓
3단계	발표심사 (심층밋업) 7월 3주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증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 최종 검토 - 사업계획서 발표(1:1 비즈니스 미팅) 및 HS효성/효성 현업부서-신청기업 간 심층 밋업을 통한 지원기업 최종 선발
↓	↓	↓
4단계	선정결과 발표 7월 4주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종 선정기업 발표 및 협약체결(7월 말) - (협약)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↔ 지원기업 ※ 최종선정기업 중도포기,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로 후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음

* 평가 과정에서 별도의 계획, 서류, 증빙 등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,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□ 선정기준

평가항목	세부내용
타당성	제품 및 서비스 개발 계획의 부합성
과제 구체성	기업 산출물 개발 계획의 구체성 및 명료성
협업 역량	협업 의지, 협업 과제에 대한 이해도
실현 가능성	과제로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물의 구현 난이도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
기업 역량	기업의 인적·기술적 역량 수준

6

선정제외 대상

- ①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도용하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 작성된 경우
- ②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③ 동 사업의 사업화 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- ④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- 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- ⑥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(개인, 법인)
- ⑦ [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](#) 제4조의 업종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- ⑧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7

유의사항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서류접수 시 마감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,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센터는 책임지지 않음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협업제안서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
-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(지침, 기준)에 위배되거나 협업제안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□ 평가 관련 유의사항

-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자(기업)가 없을 수 있음
- 발표평가는 신청기업 대표가 참석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지참 필수
-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, 신청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할 수 있음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, 사업비 환수·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
□ 선정자의 의무

-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
- 선정자는 협업제안서에 명시된 사업화 및 시제품제작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
- 선정자가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지원금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선정자는 협업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

8

문의처

문의처	연락처
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창업본부 민관협력팀	063-220-8936

참고

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(기창업자 해당, 공고일 기준)

□ 창업여부 기준

신청기업 구분	상세 구분		창업여부	
개인기업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동종유지	창업아님	
		이종	창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창업아님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업
			폐업 3년 초과	창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부도/파산 - 2년 초과			창업	
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	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창업		
법인기업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동종유지	창업아님	
		동종의 신규 법인설립	창업	
		이종	창업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업
			폐업 3년 초과	창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업
		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
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업
			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 또는 최대주주	창업아님
동종창업		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업	
자회사 여부	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이면서 최대주주	창업아님		
조직변경	동종유지	창업아님		
	이종	창업	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창업		

- 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함
- ※ 동종의 범위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- ※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: 영 시행(2020.10.8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